

[사 건 명] 행심 2019 - 97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00000000000어학원의 미등록 외국인 강사 채용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2019. 3. 20.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① 학원 명칭 사용 위반, ② 강사 채용 미통보, ③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사실을 적발하여 2019. 5. 1. 벌점 26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급식소 설치 운영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2019. 4. 19., 2019. 4. 22.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④ 시설무단변경 위반을 적발하여 2019. 6. 10. 벌점 10점 부과 및 누계 벌점 36점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 내에 인덕션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미술재료를 녹이거나 데우는데 사용하던 것으로, 수업교구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한 것이며 조리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강의실의 전기밥솥은 학생들이 가지고 온 음식물을 보온하기 위하여 비치한 것일 뿐, 밥을 한 사실이 없다.
-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인덕션과 전기밥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설무단 변경 위반으로 별점 1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별점을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는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6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원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덕션과 전기밥솥 단 두 개만을 비치한 것에 불과하다.
- 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식당으로 사용하였다면 수도시설이나 배수관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마.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와 이유는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6을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어느 규정상 어느 항목에 해당

하는지는 불명확하여 행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확대해석 및 오인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미술체험 수업의 교구재로 활용하기 위한 식재료와 보온 목적의 전기밥솥을 비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학원 등록 시에 제출한 시설평면도에 따르면 강의실로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당초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어 행정 처분 경고(벌점 10점)를 받은 것이다.
- 나. 시설무단변경에 따른 경고(벌점 10점)와 누계 벌점 36점으로, 운영정지 15일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3조의2, 제17조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라.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00000000000어학원 시설평면도를 보면, 휴게실 옆의 공간은 강의실로 표시되어 있다.
- 나. 휴게실 옆 강의실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밥솥, 전자레인지, 그릇 등 주방용품과 테이블, 의자가 놓여져 있다. 반면 강의에 필요한 화이트보드 또는 칠판이나 강의용 교재 등은 없었다.
- 다. 00000000000어학원 직원명부에는 ‘조리사’가 기재되어 있고, 휴게실 사진을 보면 인덕션 및 조리도구가 있으며, 00000000000어학원은 ◇◇◇ 조리운반 배식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00000000000어학원 시설평면도에는 위 휴게실 외에 식당으로 기재된 공간은 없다. 위 휴게실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6을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규정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행정의 명확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항에는 “귀 학원에 대한 강사의 해임 지연 통보에 따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를 하오니” 라고 기재하였으나,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비추어 단순 오기임을 알 수 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시설무단변경 및 운영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고(별점 10점), ○○○○○○과-*****(19.0.0.)의거 처분별점 합계 36점으로 인한 운영정지 15일” 이라고 기재하면서, 법적 근거에 위 인천광역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위 인천광역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6 행정처분기준 상 별점 36~40점 구간에 해당하는 정지15일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행정의 명확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 내에 인덕선을 설치하고 전기밥솥을 둔 것으로, 인덕선과 전기밥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무단 변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무단 시설변경이 문제가 된 곳은, 휴게실 바로 옆의 시설평면도 상 강의실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다. 강의실로 표시된 곳은 오로지 강의실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강의실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그릇 등 주방용품 및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반면 강의에 필요한 화이트보드 또는 칠판이나 강의용 교재 등은 없었다.

또한 직원명부에는 ‘조리사’가 기재되어 있고, 휴게실에는 조리가 가능한 인덕션 및 조리도구가 있으며, ◇◇◇는 조리운반 배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조리는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평면도 상 휴게실 외에 식당으로 기재된 곳이 없고, 휴게실에는 그 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위 강의실을 식당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강의실을 강의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실제적 하자가 없어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